

#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

2025. 1

# || 목 차 ||

■ 국토교통부 .....	1
■ 기획재정부 .....	6
■ 조달청 .....	8
■ 행정안전부 .....	9
■ 고용노동부 .....	11
■ 법무부 .....	12
■ 교육부 .....	13
■ 환경부 .....	14
■ 공정거래위원회 .....	15

■ 국토교통부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품질시험 결과 CSI 입력 의무 신설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내 아래 내용 및 자료를 CSI(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)에 입력하여야 함</li> <li>- 검사종목·기준·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</li> <li>- 품질관리인의 성명·서명, 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 기재내용</li> <li>- 품질검사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증빙자료</li> </ul> <p>※ 기한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: 300만원 이하 과태료</p>	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·제5항 및 시행령 제91조제4항 (‘24.7.10 시행)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0)
2	품질검사 대행시 CSI 이용 의무화	○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기관 등에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(후단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기관 등에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, 이 경우 CSI(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)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함</li> <li>- 입력사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품질검사 대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· 품질검사 의뢰자,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등의 성명 및 서명</li> </ul> </li> </ul>	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 (‘24.7.10 시행)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0)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건설자재·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사업자는 건설자재·부재*를 공급 받으려는 공장 선정 시 발주청, 공사감독자, 공사감리자, 건축법상 감리자, 주택법상 감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</li> </ul> <p>* 레디믹스트콘크리트, 아스팔트콘크리트, 바닷모래, 부순 골재, 철근 등 강재, 순환골재</p>	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1항 및 시행령 제95조제1항 ('24.7.10 시행)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0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콘크리트 품질시험 빈도기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(레미콘 포함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시험종목</th> <th>시험빈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온도</td> <td>150m³마다</td> </tr> <tr> <td>슬럼프 등</td> <td>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</td> </tr> <tr> <td>공기량</td> <td>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³ 이상 : 150m³마다</td> </tr> <tr> <td>염화물 함유량</td> <td>필요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굳은 콘크리트(레미콘 포함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시험종목</th> <th>시험빈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압축강도</td> <td>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레미콘은 KS F 4009, ·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험종목	시험빈도	온도	150m³마다	슬럼프 등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	공기량	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³ 이상 : 150m³마다	염화물 함유량	필요시	시험종목	시험빈도	압축강도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레미콘은 KS F 4009, ·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(레미콘 포함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시험종목</th> <th>시험빈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온도</td> <td>120m³마다</td> </tr> <tr> <td>슬럼프 등</td> <td>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</td> </tr> <tr> <td>공기량</td> <td>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</td> </tr> <tr> <td>염화물 함유량</td> <td>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</td> </tr> <tr> <td>단위수량</td> <td>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굳은 콘크리트(레미콘 포함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시험종목</th> <th>시험빈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압축강도</td> <td>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</td> </tr> <tr> <td>휨 강도</td> <td>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험종목	시험빈도	온도	120m³마다	슬럼프 등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	공기량	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	염화물 함유량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	단위수량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	시험종목	시험빈도	압축강도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	휨 강도	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	<p>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(국토부고시) 별표2 나. ('24.11.18 시행)</p>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0)
시험종목	시험빈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온도	150m³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슬럼프 등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기량	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³ 이상 : 150m³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염화물 함유량	필요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험종목	시험빈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압축강도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레미콘은 KS F 4009, ·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험종목	시험빈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온도	120m³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슬럼프 등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기량	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염화물 함유량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위수량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험종목	시험빈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압축강도	·배합이 다를 때마다 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미만 : 1일 타설량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휨 강도	·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³ 이상 : 120m³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																
5	잔여 경감점수 활용제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실벌점 부과시 관리우수 비율 80%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</li> </ul> <p>- 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실벌점 부과시 관리우수 비율 80% 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</li> <li>경감점수가 부과된 벌점점수보다 큰 경우, 다음 반기의 벌점에서 경감</li> </ul>	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바목2) ('24.7.1 시행) ※ 시행후 부과된 벌점을 경감하는 경우부터 적용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0)																
6	가설구조물 관련 벌점측정 기준변경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주요부실내용</th> <th>벌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가)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,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나)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주요부실내용	벌점	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		가)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,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	2	나)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	1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주요부실내용</th> <th>벌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가)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나)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주요부실내용	벌점	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		가)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	2	나)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	1	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2) ('24.7.1 시행)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6)
주요부실내용	벌점																				
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																					
가)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,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	2																				
나)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	1																				
주요부실내용	벌점																				
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																					
가)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	2																				
나)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	1																				
7	초급·중급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 축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급·중급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</li> </ul> <p>- 20m<sup>2</sup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급·중급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</li> </ul> <p>- 18m<sup>2</sup></p>	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 ('24.7.10 시행)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0)																
8	역세권 등의 지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적용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철도승강장 경계로부터 시·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(250~500m) 등의 지역에 용적률 최대 20%까지 완화</li> </ul>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('24.1.19 시행)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(044-201-3390)																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9	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「<u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</u>」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(표준 건축비)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<u>주택법</u>」 제57조제4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<u>건축비(기본형건축비)의 80퍼센트</u></li> </ul>	<p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(25.3.18 시행)</p>	<p>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(044-201-3390)</p>
10	재건축진단 (안전진단)시기유예 및 조합추진위 혹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진단 요청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시장·군수등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li> <li>○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</li> </ul>	<p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, 제14조 (25.6.4 시행)</p>	<p>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(044-201-3390)</p>
12	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	<p>&lt; 신 설 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「<u>건설산업기본법</u>」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</li> </ul>	<p>주택법 제44조제1항 (24.7.17 시행)</p>	<p>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78)</p>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2	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	< 신 설 >	○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	주택법 제44조제1항 ('24.7.17 시행)	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78)
13	무량판 구조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의무화	< 신 설 >	○ 라. 지하층 각 층(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	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('24.7.17 시행)	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(044-201-4752)
14	재개발사업 등에서 공동소유물의 대표자 인정요건 완화	○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(전원동의 필요)	○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('24.3.19 시행)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(044-201-3390)

■ 기획재정부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	○ 중앙정부 : 83억 원 ○ 공공기관 : 249억 원	○ 중앙정부 : 88억 원 ○ 공공기관 : 265억 원	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및 기재부 고시 (‘25.1.1 시행)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(044-215-5217)
2	공사이행보증 감경 특례 근거 신설	○ 경제위기시 계약보증금률 50% 감경(15%→7.5%)	○ 공사이행보증률을 50% 감경 근거 추가 신설(40%→20%)	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(‘24.12.24 시행)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(044-215-5217)
3	계약해지로 인한 수익계약시 물가변동분 반영 현실화	○ 계약 해지에 따른 수익계약 시 수익계약 체결일을 기준 으로 물가변동분 반영	○ 기존계약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 반영	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(‘24.12.24 시행)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(044-215-5217)
4	부정당제재 면책 근거 마련	○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체 사유로만 적용	○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정당 제재 면책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	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(‘24.12.24 시행)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(044-215-5217)
5	입찰참가자격 등록 간소화	○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인감 증명서 제출 의무화	○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	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(‘25.1.2 시행)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(044-215-5217)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6	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 개선	○ 신기술인증제품 자재를 관급자재로 발주시에만 하자책임구분 용이성, 공정관리 지장 여부 고려	○ 모든 관급자재 발주시 하자책임구분, 공정관리 지장 여부를 고려하고, 공사 규모도 추가 고려하도록 의무화	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('25.1.2 시행)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(044-215-5217)
7	부정당업자 제재기간 합리화	○ 부정당업자 제재 시 제재기간 1/2 감경 가능	○ 위반행위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감경 후 잔여기간의 1/2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 가능	국가계약법 시행규칙 [별표2] ('25.1.2 시행)	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(044-215-5217)
8	민자사업 물가반영 특례	< 신 설 >	○ (BTO) '21~'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CPI상승률 차이의 50% 총사업비 반영 ※ 불변가격기준시점이 '21년 이전이고, 현재 협약체결전인 사업 ○ (BTL) 가격산출기준일~고시일 물가 변동분의 50%반영 ※'23년 이전 최초 고시사업	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('24.10.14 시행)	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(044-215-5458)
9	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 보증 한도 확대	○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: <u>1조원</u>	○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: <u>2조원</u>	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('24.12.17 시행)	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(044-215-5458)

■ 조달청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조달청 중심제 시공계획서·배치계 획서 제출시기 조정	○ 입찰 <u>시</u> 제출	○ 입찰 <u>후</u>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	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의3, 제6조의4 (‘25.1.1 시행)	조달청 토목환경과 (042-724-7370)
2	차세대 나라장터 개통	○ <u>법인용 공인인증서만 허용</u>	○ <u>간편인증·금융인증 등 인증수단 다양화, 지문인식 입찰제도 폐지</u>	(‘25.1.6 개통)	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구축추진단 (042-724-6352)

■ 행정안전부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직접시공평가제 도입 (30억 이상 공사)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</li> <li>- (대상) 지방계약법 적용 30억원이상 공사(기술형입찰 제외)</li> <li>- (비율) 직접노무비 기준 30%*이상 직접 시공</li> <li>* 시행 초기임을 감안, 별도 안내시까지 20%로 완화 적용</li> <li>- (확인) 노무비 지급 자료, 통보된 하도급계약 등을 통해 직접시공 여부 확인</li> <li>○ 직접시공평가 신설에 따라, 기존 ①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및 직불 계획 평가, ②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 비율(40%이상) 평가 삭제</li> </ul>	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7절 1, 제2장의1 [별표1] 3. 나, 제3장 제6절 ③라 ('25.1.1 시행)	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(044-205-3784)
2	한시적 보증금 인하 ※ '25.6.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찰보증금 : 입찰금액 <u>5%</u></li> <li>○ 계약보증금 : 계약금액 <u>10%</u></li> <li>○ 공사이행보증 대상 : 계약금액의 <u>40%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찰보증금 : 입찰금액 <u>2.5%</u></li> <li>○ 계약보증금 : 계약금액 <u>5%</u></li> <li>○ 공사이행보증 대상 : 계약금액의 <u>20%</u></li> </ul>	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('20.7.14 시행), 제51조①('23.3.7 시행) 및 행안부 고시 ('25.1.1 시행)	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(044-205-3784)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3	<b>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</b> ※ '25.6.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	○ 검사기한 : <u>14일</u> ○ 대금지급기한 : <u>5일</u>	○ 검사기한 : <u>7일</u> ○ 대금지급기한 : <u>3일</u>	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, 제67조① ('20.7.14 시행) 및 행안부 고시 ('25.1.1 시행)	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(044-205-3784)
4	<b>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</b> ※ '25.6.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	○ 유찰시 <u>재공고</u>	○ 유찰시 <u>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</u>	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② ('22.9.20 시행) 및 행안부 고시 ('25.1.1 시행)	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(044-205-3784)
5	<b>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</b>	○ <u>249억 원</u>	○ <u>265억 원</u>	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 및 행안부 고시 ('25.1.1 시행)	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(044-205-3781)

■ 고용노동부 소관사항

No.	제 목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율	○ 1.27%~3.43% (대상액*×율) * 재료비 + 직접노무비	○ 1.64%~3.64% (대상액×율) ※ 평균 19% 상승	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(25.1.1 시행)	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 정책과 (044-202-8938)

■ 법무부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제도 규제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E-74 전환요건</li> <li>- 1사당 허용인원 : <u>연평균 공사금액 10억당 1명</u></li> <li>- 한국어 충족요건 : <u>신청시 한국어 요건 충족</u></li> <li>- 체류기간 요건 : <u>4년 이상 체류시 전환신청 가능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E-74 전환요건 완화</li> <li>- 1사당 허용인원 : <u>시공능력평가액 10억당 4명</u></li> <li>- 한국어 충족요건 : <u>전환 후 2년 내 충족(‘26.12월 限)</u></li> <li>- 체류기간 요건 : <u>3년(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추천 필요)</u></li> </ul>	법무부 지침개정 (‘25년)	법무부 체류관리과 (02-2110-4070)

■ **교육부 소관사항**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학교용지 부담금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개발사업”이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·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</li> <li>공동주택 :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<u>×1천분의 8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개발사업”이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·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</li> <li>공동주택 :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<u>×1천분의 4</u></li> </ul>	<p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, 제5조의2 (25.6.21 시행)</p> <p>※ 시행 이후 최초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부터 적용</p>	<p>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(044-204-6641)</p>

■ 환경부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불소 토양오염기준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양오염우려기준 (단위 : mg/kg)</li> <li>- 1지역 400, 2지역 400, 3지역 800</li> <li>○ 토양오염대책기준 (단위 : mg/kg)</li> <li>- 1지역 800, 2지역 800, 3지역 2,000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양오염우려기준(단위 : mg/kg)</li> <li>- 1지역 800, 2지역 1,300, 3지역 2,000</li> <li>○ 토양오염대책기준(단위 : mg/kg)</li> <li>- 1지역 2,400, 2지역 3,900, 3지역 6,000</li> </ul>	<p>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, 별표7 (24.12.12 시행)</p> <p>※ 시행 이후 지정화 명령, 토양정밀조사 명령 등 부터 적용</p>	<p>환경부 토양지하수과 (044-201-7177)</p>

## 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

No.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지출 시 정산 협의 규정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의무 규정</li> <li>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</li> <li>- &lt;단서 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지출 시 협의규정 신설</li> <li>- 수급사업자가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하도급한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산</li> </ul>	표준하도급계약서 제22조제4항 ('25.1.1 시행)	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953)
2	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 단가 기준으로 상호협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산출내역서 상 단가로 규정</li> <li>-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(공사)내역서상의 단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감된 공사 단가를 산출내역서 상 단가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</li> <li>-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(공사)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</li> </ul>	표준하도급계약서 제35조제4항제1호 ('25.1.1 시행)	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953)
3	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명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 등으로 인한 하자는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면책규정의 요건을 원재료의 품질 규격 미달 및 성질 등으로 명확화</li> <li>-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</li> </ul>	건설법 제28조제2항제1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7조 ('25.1.1 시행)	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953)